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8698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7. 5.

주 문

1. 피고가 2017. 9. 10. 원고 A에게 한 재산세 98,053,030원의 부과처분 중 16,56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9,610,600원의 부과처분 중 3,313,210원을 초과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는 부분, 원고 C에게 한 재산세 100,756,810원의 부과처분 중 19,26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0,151,260원의 부과처분 중 3,853,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D, E에게 한 각 재산세 37,490,430원의 부과처분 중 각 3,465,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각 지방교육세 7,498,080원의 부과처분 중 각 693,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10. 25. 원고 A, B, C[1]에게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1960. 12. 31. [redacted] [redacted]구 F 대 6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2. 5. 3. 원고 A, C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지분 650.6분의 231씩을 증여하고 200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 A, C은 2005. 9. 2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의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 별지 1 목록 기재에 의하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사자는 원고 A, B, C 임이 명백하므로, 2018. 5. 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원고들" 부분은 "원고 A, B, C"의 오기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원고 B 100분의 10, 원고 A, C 각 100분의 45로 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16. 12. 30. 원고 D,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각 650.6분의 94.3씩을, 이 사건 건물 지분 각 100분의 5씩을 증여하고, 2017. 2.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

나.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당시 이 사건 건물 지상 3~5층에는 'G'라는 상호의, 위 건물 지상 2층에는 'H'라는 상호의 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주점이 남성 룸 디제이들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면서 주점영업을 하였다(이하 위 각 주점을 '이 사건 주점들'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른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7. 9. 10. 원고 A에 대하여 재산세 98,053,030원 및 지방교육세 19,610,600원을, 원고 C에 대하여 재산세 100,756,810원 및 지방교육세 20,151,260원을, 원고 E, D에 대하여 각 재산세 37,490,430원 및 각 지방교육세 7,498,0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A, B, C은 피고가 2015. 7. 15. 이 사건 주점들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되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주점들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가 2015. 7. 15. 위와 같이 부과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71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744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자 2017두48376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 A, B, C은 2017. 10. 10. 피고에게, 피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 보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부과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0. 25. 위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은 정기분 재산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부과처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경정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점들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중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A, B, C은 일단 위 기간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두고 추후 사유를 보완하고자 하였는데, 피고는 보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에 위반된다.

또한 원고 A, B, C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후발적 경정청구로 사유서는 추후 제출'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피고는 통상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지 제출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7. 9. 25.로부터 3개월 내인 2017. 10. 10. 피고에게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관련 판결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므로,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요정 등의 영업장소에 관하여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 중 ②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한편,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이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의 중과대상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점들에서 남성 룸 디제이들이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① 위 남성 룸 디제이들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주점들이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과 달리 남성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공평주의에 다소 어긋나거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려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접객원은 남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나 이를 2017년 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에 소급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과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소정의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 A, C, D, E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정당세액은 아래 표 기재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순번	원고	세목	이 사건 부과처분	정당세액
1	A	재산세	98,053,030원	16,566,060원
		지방교육세	19,610,600원	3,313,210원
2	C	재산세	100,756,810원	19,269,340원
		지방교육세	20,151,260원	3,853,860원
3	D	재산세	37,490,430원	3,465,580원
		지방교육세	7,498,080원	693,110원
4	E	재산세	37,490,430원	3,465,580원
		지방교육세	7,498,080원	693,110원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관련 판결의 확정은 법령 해석에 관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원고 A, B, C[이하 2)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이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역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별지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목록 기재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의 확정'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통상의 경정청구로 본 나머지, 그것이 법적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의 확정'이라는 사정이 그 자체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후 보완 예정임을 명시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보완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추후에 상세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그 자체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셈이 되는바, 이와 같이 그 흠을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한 보완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주점들이 남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을 뿐이고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남성 유흥접객원의 고용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1항이 정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주점들이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남성 유흥접객원 역시 위 규정이 정하는 '유흥접객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련 판결에 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 당시의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련 판결은 남성 유흥접객원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피고와 달리한 것이다. 즉,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과 관련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주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남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일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관련 판결은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 하는 재산세 등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 A, C, D, E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A, B, C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별지 1

목 록

처분대상자	처분일	세목	처분세액 (원)	경정청구금액 (원)
A	2012. 9. 10.	재산세	68,104,620	58,106,160
		지방교육세	13,620,920	11,621,230
	2013. 7. 15.	재산세	10,793,220	9,918,350
		지역자원시설세	814,590	30,470
		지방교육세	2,158,640	1,983,670
	2013. 9. 10.	재산세	73,595,300	62,717,760
		지방교육세	14,719,060	12,543,320
	2014. 7. 15.	재산세	11,460,820	10,535,560
		지역자원시설세	1,190,370	357,970
		지방교육세	2,292,160	2,107,110
	2014. 9. 10.	재산세	78,849,790	65,715,300
		지방교육세	15,769,950	13,143,060
	2015. 9. 10.	재산세	84,141,120	70,050,210
		지방교육세	16,828,220	14,010,040
	2016. 7. 15.	재산세	10,912,390	10,030,960
		지역자원시설세	1,131,980	341,780
		지방교육세	2,182,470	2,006,190
	2016. 9. 10.	재산세	90,812,380	75,538,010
		지방교육세	18,162,470	15,107,600
B	2012. 9. 10.	재산세	53,548,800	48,095,000
		지방교육세	10,709,760	9,691,000
	2013. 7. 15.	재산세	2,398,490	2,204,080
		지역자원시설세	181,020	49,860
		지방교육세	479,690	440,810
	2013. 9. 10.	재산세	57,814,580	51,832,700
		지방교육세	11,562,910	10,366,540
	2014. 7. 15.	재산세	2,546,840	2,341,230
		지역자원시설세	264,520	122,630
		지방교육세	509,360	468,240
	2014. 9. 10.	재산세	60,587,350	54,262,210
		지방교육세	12,117,470	10,852,450
	2015. 9. 10.	재산세	64,597,180	57,775,650
		지방교육세	12,919,430	11,555,1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2016. 7. 15.	재산세	2,424,970	2,229,100
		지역자원시설세	251,550	119,040
		지방교육세	484,990	445,820
	2016. 9. 10.	재산세	69,673,450	62,223,500
		지방교육세	13,934,690	12,444,700
C	2012. 9. 10.	재산세	68,104,620	58,106,160
		지방교육세	13,620,920	11,621,230
	2013. 7. 15.	재산세	10,793,220	9,918,350
		지역자원시설세	814,590	30,470
		지방교육세	2,158,640	1,983,670
	2013. 9. 10.	재산세	75,593,440	62,717,760
		지방교육세	15,118,680	12,543,550
	2014. 7. 15.	재산세	11,460,820	10,535,560
		지역자원시설세	1,190,370	357,970
		지방교육세	2,292,160	2,107,110
	2014. 9. 10.	재산세	82,084,630	65,715,300
		지방교육세	16,416,920	13,143,060
	2015. 9. 10.	재산세	86,360,660	70,050,200
		지방교육세	17,272,130	14,010,040
	2016. 7. 15.	재산세	10,912,390	10,030,960
		지역자원시설세	1,131,980	341,780
		지방교육세	2,182,470	2,006,190
	2016. 9. 10.	재산세	93,248,170	75,538,010
		지방교육세	18,649,630	15,107,600
			합 계	**1,236,508,30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별지 2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세율)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부칙 <제2852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1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끝>